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람 | 기관위원장 |
| | |

제848호 2011. 9. 14.(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0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09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당초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변경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 포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공무원 배치
 - 인구수에 비례하여 조례안에 명시
- 제4조(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확대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양·건강관리등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 아동의 보육·교육의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제공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자체 연간계획 수립
 -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시행계획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심의·확정
 - 시행계획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협조 요청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의.조정

- 당초 : 9인이내의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변경 : 15인이내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전담센터의 지정 및 위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과 다문화가족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회의의 기능) 협의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